

대통령령 제 호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,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제14조의2,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(비밀유지계약 체결 시 서면 기재사항) 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

서 “그 밖에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.

1. 해당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
2. 해당 기술자료 제공목적 및 목적 외 사용금지
3. 해당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
4. 해당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
5.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
6.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배상
7. 해당 기술자료 제공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
8. 해당 기술자료의 제공일 및 제공방법
9. 해당 기술자료의 사용기간
10. 해당 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
11. 해당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

제21조제2항 중 ‘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’를 ‘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사업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중

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' 한다.

제28조 제목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8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대통령령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8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제2호의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. 다만, 합산하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다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라. 다목에 따른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2. 개별기준

위반 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20조의2 <u>제5항에</u> 따른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지 않은 경우	법 제43조 <u>제4항</u> 제1호	100만원		
나.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	법 제43조 <u>제3항</u> 제1호	500만원		
다.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	법 제43조 제3항 제2호			
1) 위반행위자가 대기업인 경우		500만원		
2)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인 경우		250만원		
라.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43조 <u>제4항</u> 제2호	100만원		
마. 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43조 제1항	1억원		
바.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경우	법 제43조 <u>제4항</u> 제3호	500만원		
사. 법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43조 제2항			
1) 법 제25조제2항의 위반행위에 관한 자료 제출요구 또는 조사요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	1천만원	2천5백만원	5천만원
2) 그 밖의 법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	1천만원		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 신 설 ></u>	<u>제14조(비밀유지계약 체결 시 서면 기재사항)</u> 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서 “그 밖에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. <u>1. 해당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</u> <u>2. 해당 기술자료 제공목적 및 목적 외 사용금지</u> <u>3. 해당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</u> <u>4. 해당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</u> <u>5.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</u> <u>6.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배상</u> <u>7. 해당 기술자료 제공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</u> <u>8. 해당 기술자료의 제공일 및 제공방법</u> <u>9. 해당 기술자료의 사용기간</u> <u>10. 해당 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</u> <u>11. 해당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</u>
<u>제14조 · 제14조의2 · 제14조의3</u> (생략)	<u>제14조의2 · 제14조의3 · 제14조의4</u> (현행 제14조,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과 같음)
제21조(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구성) ① (생략)	제21조(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구성) ① (생략)

현 행	개 정 안
② 조정심의회회의 위원장은 <u>중소벤처기 업부차관</u> 으로 한다.	② ----- <u>중소벤처기 업부에서 중소기업사업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</u> ----.
③ ~ ⑧ (생 략)	③ ~ ⑧ (생 략)
<u>제28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43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</u> 따른 과태료 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	<u>제28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43 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</u> ----- -----.

□ 별표 2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8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제2호의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. 다만, 합산하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다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라. 다목에 따른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20조의2 <u>제5항</u> 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지 않은 경우	법 제43조 <u>제4항</u> 제1호	100만원		
나.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약정	법 제43조 <u>제3항</u> 제1호	500만원		

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		
<u>다.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</u>	<u>법 제43조 제3항 제2호</u>	
<u>1) 위반행위자가 대기업인 경우</u>		<u>500만원</u>
<u>2)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인 경우</u>		<u>250만원</u>
<u>라.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</u>	<u>법 제43조 제4항 제2호</u>	100만원
<u>마. 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</u>	<u>법 제43조 제1항</u>	1억원
<u>바.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경우</u>	<u>법 제43조 제4항 제3호</u>	500만원
<u>사. 법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</u>	<u>법 제43조 제2항</u>	
<u>1) 법 제25조제2항의 위반행위에 관한 자료 제출요구 또는 조사요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</u>		<u>1천만원</u> <u>2천5백만원</u> <u>5천만원</u>
<u>2) 그 밖의 법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</u>		<u>1천만원</u>